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4. 12. 26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4. 12. 26

라. 상정일자 : 1994. 12. 29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이효선)

가. 제안이유

-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94.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권한위임할 수 있어
-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시키고자 조례 개정

나. 주요골자

○ 위임사무 ————— 4건(시장→구청장)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폐기물관리법 제6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2조)

-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등(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련한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등(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9
의 결	94. 12. 29
년 월 일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2. 26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94. 정기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권한위임할 수 있어
-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시키고자 조례 개정

□ 주요골자

- 위임사무 _____ 4건(시장→구청장)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폐기물관리법 제6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2조)
 -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등(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련한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등(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중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을 “번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1.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실 과 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보호과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법 제7조 및 제15조 제2항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부천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11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법 제15조 제5항에 한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동조례 제11조
	3.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일반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처리 ② 쓰레기 봉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봉투의 제작 등 · 봉투의 공급 및 판매 ·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 수수료의 감면 · 봉투의 매수 · 판매소 지정·취소 · 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부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31조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동조례 제19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2항 동조례 제20조 동조례 제22조 동조례 제23조 동조례 제25조, 제27조 동조례 제28조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② 수수료의 감면 ③ 분뇨처리장 처리비 감면 ④ 공무원의 전문검사권 ⑤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⑥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⑦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부천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37조 동조례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조례 제14조 동조례 제15조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동조례 제25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조례 제8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u>청소과</u>	1. <u>공중변소의</u> <u>화충 및 유</u> <u>지관리</u> <u>(신 설)</u>	<u>폐기물관리법</u> <u>제5조제3항</u> <u>(신 설)</u>	<u>환경보호과</u>	<u>(삭 제)</u> 1. <u>폐기물관리법에의</u> <u>한 다음의 권한</u> <u>① 과태료의 부과·</u> <u>징수(단, 법 제7조</u> <u>및 제15조제2항에</u> <u>한함)</u>	<u>(삭 제)</u> 폐기물관리법제63조제 1항제1호및제2호, 동 법시행령제42조, 동법 시행규칙제84조, 부친 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 과·징수업무에관한조 례 제11조
	<u>(신 설)</u>	<u>(신 설)</u>		2. <u>자원의 절약과 재활</u> <u>용촉진에 관한 다음</u> <u>의 권한</u> <u>① 과태료의 부과·</u> <u>징수(단, 법 제15</u> <u>조제5항에 한함)</u>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u> <u>촉진에관한법률 제42</u> <u>조, 동조제 제11조</u>
	<u>(신 설)</u>	<u>(신 설)</u>		3. <u>일반폐기물처리에</u> <u>관한 다음의 권한</u> <u>① 일반폐기물중대</u> <u>형폐기물및 재활용</u> <u>가능폐기물의 처</u> <u>리</u>	<u>폐기물관리법 제13조</u> <u>부친시폐기물관리에</u> <u>관한조례 제31조</u> <u>동조제 제7조제2항및</u> <u>제3항</u>

현행			개정 (안)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실과별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u>② 쓰레기봉투에 관한 다음의 사항</u> • 봉투의 제작 등 • 봉투의 공급 및 판매 • 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 살수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 수수료의 감면 • 봉투의 매수 • 판매소 지정·취소 • 보고 및 판매대장 등의 확인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동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동조례 제20조 동조례 제22조 동조례 제23조 동조례 제25조, 제27조 동조례 제28조
	(신 설)	(신 설)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② 수수료의 감면 ③ 분뇨처리장 처리비 감면 ④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⑤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⑥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⑦ 공중민소의 설치 및 관리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37조 동조례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조례 제14조 동조례 제15조 동조례 제17조 동조례 제18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동조례 제25조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조례 제8조